27.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근로자에서 발생한 방광암

성별	남성	나이	만 53세	직종	자동차부품 제조업체 근로자	직업관련성	높음
----	----	----	-------	----	----------------	-------	----

1 개 요

근로자 ○○○는 1986년 7월부터 1992년 9월까지 약 6년 3개월 동안 △사업장에서 신발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. 그 후 2002년 2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약 2년 동안 ◇사업장에서 사무 업무를 수행했고, 2005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□사업장에서 튜브 접합업무를 수행하였다. 이 기간 중 2006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는 □사업장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. 만 53세가 되던 2014년 3월 31일에 대학병원에서 방광암을 진단받았고, 이후 입원과 외래치료를 병행하였지만 2016년 4월 30일 사망하였다. 유족은열악한 작업환경에 의해 상기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 상보험 유족급여 신청을 하였으며,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.

2 작업환경

근로자 ○○○는 1986년 7월부터 1992년 9월까지 약 6년 3개월 동안 △사업장에서 신발제작 업무를 수행하였으나, 근로자가 사망하여 자세한 업무 내용은 알 수 없었다. 2002년 2월부터 약 2년 동안 ◇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였고, 2005년 3월부터 9년 동안 □사업장 협력업체에서 튜브 접합공정을 수행하였다.

3 해부학적 분류

- 기타 암

4 유해인자

- 화학적 요인

5 의학적 소견

근로자 ○○○는 53세 되던 2014년 2월경부터 배뇨통을 주소로 전립선비대증 의심 하에 비

노기과에서 진료를 보았고 수행한 검사에서 방광의 종양이 관찰되어 대학병원으로 추가 진단 및 진료를 위해 전원 되었다. 추가로 수행한 영상 검사에서 방광후벽의 4*3크기의 종양이 관찰되었고 전이 여부 확인을 위해 수행한 영상검사에서 전립선 및 폐전이소견이 확인 되었다. 2014년 3월 20일 방광경요도절제술(Trans-urethral resection of bladder, TURB)후 조직검사에서 방광암(T4a, invasive) 확진 받았으며, 이후 4월 18일 부터 보존적 치료를 위한 항암치료 6차례 및 방사선 치료를 수행하였다. 폐전이 병변의 수술적 제거 및 보존적 치료를 위해 2014년 10월 21일 폐엽절제술 및 TURB를 받은 결과, 폐 조직 검사결과에서 폐주변 림프절 부위에 탄분증(Anthracosis)소견 관찰되었다. 이후로 11월 27일 방광완전절제술 및 추가 폐엽절제술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전이가 진행되고 경과가 악화되어 근로자는 2016년 4월 사망하였다. 2012년경 탈장 수술을 받은 것 외에는 특이질환이 없었다고 유가족은 진술하였고 2011년부터 검토된 의료수진 내역에서도 특이항목은 찾을 수 없었다. 건강진단 문진 상에서 근로자는 술은 거의 마시지 않으며 과거에 하루 10개비 정도 20년 동안 흡연을 하였다고 응답했다(2000년부터 금연). 근로자의 부모님은 모두 사망했으나 방 광암과 관련된 가족력은 없었다.

6 고찰 및 결론

근로자 ○○○(남, 1961년생)는 만 53세가 되던 2014년 3월 31일에 대학병원에서 방광암 을 진단받았다. 근로자는 1986년 7월부터 1992년 9월까지 약 6년 3개월 동안 △사업장에 서 신발제작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5년 3월부터 9년 동안 □사업장 협력업체 일신 산업에 서 튜브 접합공정을 수행하였다. 국제암연구소(IARC)는 방광암 발생의 직업적 요인으로 고 무제조산업, 도장, 비소와 무기비소 화합물 노출, 벤지딘 및 베타 나프틸아민 등이 방광암 발생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. 한편, 고무흄 노출 이후 방광암 발병까지 의 잠재기간은 알려진바 없으나 방향족 아민 노출이후 방광암 발병까지의 기간은 평균 11~15년(2~40년)로 보고되고 있으며 노출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. 근로자가 2005년부터 9년 동안 근무한 □사업장은 분진1종(탈크)의 측정 최댓값은 노출기준의 1.2~1.7배 높았다는 점에서 환기 및 배기시설이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. 그러나 근로자 가 근무한 접합공정으로부터 가황공정 등 고무흄이 발생 가능한 장소로부터 거리가 최소 3m수준 이상 떨어져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무흄의 노출수준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평 가된다. 한편, 1986년 7월부터 1992년 9월까지 약 6년간 근무한 △사업장의 작업환경은 선행조사결과를 고려할 때 환기시설 및 배기시설은 열악하였고, 이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고무 갑피 및 밑창을 찍어내는 프레스 공정에서 열에 의한 고무휴, 접착제 등에 함유된 화학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.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 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. 끝.